

第 3 主題 討論要旨

容 金鐵(사회자) :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김 광웅교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 光雄(서울대) : 발표하신 분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가지 보충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정부는 立法에 의존합니다. 그것도 적절하고 평이한 용어로 정당한 내용을 담은 입법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입법기초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번 토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독과 미국에서는 법과 대학에서 입법학과 법률 기초, 즉 “legislative drafting”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 이후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의 기초 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강조하신 전문성이라든가, 헌법에 정통해야한다든가, 관계 입법을 모두 알아야 한다든가, 또 법에 혜택 또는 규제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 그 욕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든가, 그것을 또 확대 해석해서 시대의 사조와 요청에 얼마나 부합되는 입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지식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법률 기초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보충하고 싶습니다. 저는 입법기초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수 년전 법률기초용어집이 있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입법이 많았다는 점과, 법 이념에 어긋남이 많은 점을 보면 성공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제 3 세계, 후진국에 있어 국회의원의 역할에서 law-maker의 기준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관심중에 법률 토의는 적은 범위로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입법에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각각의 정치상황의 논리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안통과에서 국회발의와 정부발의 비율을 검토해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朴 仁秀(국회) : 이렇게 학계에서 立法에 관심을 갖고 학술회의를 개최한데 대해 감사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좋은 입법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이상에 여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발표내용중에서 입법부의 통법부화 현상 심화, 국회의 입법기능의 형해화 현상의 지적에 대해 말씀해 보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국회에서 立法과정을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감이 들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立法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들은 法律 專門審議官의 지도를 받습니다. 또한 정부안이 급속히 통과되지

만 정부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가 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검토하는 것을 보면, 법안 1건당 1개 소위원회가 적어도 검토하게 됩니다. 또 거의 모든 법안이 수정가결되지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또 발표에서 의원명의회이 명의를만 빌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회가 완전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즉 立法에서 민주성, 전문성의 문제가 있지만, 국회가 통법부화나 형해화의 심각성을 떠지 않고 있다고 反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